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7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」 개정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(법률 제19769호, 2023. 10. 24. 공포)되어 도서·산간 등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, 국가·지자체가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물류취약지역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물류취약지역 지정기준 마련(안 제1조의2)

물류취약지역 지정 기준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지정 절차 신설

### 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  
까지 우편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일반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, 정부세종청사 6-2동

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

(전화 044-201-4156, 팩스 044-201-5601)

### 4. 그 밖의 사항

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의 『정책자료-법령정보/입법·행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  
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물류취약지역의 지정기준) ①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”이란 시·군·구 중에서 소비자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부 및 요금 수준, 배송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,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·도에 속한 시·군·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제2호”를 “법 제5조제1항제2호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조의2(물류취약지역의 지정기준) ①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”이란 시·군·구 중에서 소비자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부 및 요금 수준, 배송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.</p> <p>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·도지사와의 협의를 하여야 하며,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·도에 속한 시·군·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p>
<p>제2조(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</p>	<p>제2조(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</p>

준 등) ①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·장비 및 영업점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(생략)

준 등)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	
연 락 처	(044) 201 - 4156